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(안)

검 토 보 고 서

(보건소 소관)

2021. 6. 15.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(안)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83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와 제134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0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,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결산개요

나. 세입·세출의 결산

다. 재무제표

라. 성과보고서

마. 결산서 첨부서류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, 제134조(결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(결산 승인)

○ 관련서류 : 2020회계연도 결산서(안) 및 결산검사 의견서

5. 검토의견

가. 보건소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결산

1) 세입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 (결산서p)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(B/A)
계	**10,405,388,000**	**10,958,230,880**	**10,934,805,460**	**99.7%**
보건의료과 (101p)	3,226,926,000	3,351,652,180	3,351,652,180	100%
건강증진과 (103p)	6,825,144,000	7,262,970,600	7,240,090,780	99.6%
위생과 (104p)	353,318,000	343,608,100	343,062,500	99.8%

○ 202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04억 538만 8천원이며, 징수결정액은 109억 5,823만원, 세입결산액은 109억 3,480만 5천원으로 징수율은 99.7%임.

2) 세출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지 출 액	다음연도 이 월 액	보조금 반납금	집행잔액	
					금 액	비율(%)
계	**18,294,430,950**	**16,216,525,880**	**921,405,060**	**462,856,415**	**693,643,595**	**3.7%**
보 건 의 료 과 (201p)	6,028,432,300	4,889,550,490	625,560,540	153,997,075	359,324,195	5.9%
건 강 증 진 과 (204p)	11,690,221,650	10,772,317,130	295,844,520	307,119,340	314,940,660	2.6%
위 생 과 (210p)	575,777,000	554,658,260		1,740,000	19,378,740	3.3%

○ 2020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182억 9,443만원이며, 지출액은 162억 1,652만 5천원,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,140만 5천원, 보조금반납금은 4억 6,285만 6천원, 집행잔액은 6억 9,364만 3천원임.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3.7%로 2019회계연도의 3.9%보다 0.2% 감소하였음.

가) 다음연도 이월사업

○ 명시이월사업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예산현액	지출원인행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 월 액	이월사유
계		**4,012,598**	**3,615,813**	**3,367,397**	**578,837**	
보 건 의료과	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외 2건	391,560	267,539	19,123	372,437	심사보조자료 261p참고
건 강 증진과	국가예방접종 실시 외 2건	3,621,038	3,348,274	3,348,274	206,400	〃 276참고

-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2개 부서에 6건 5억 7,883만 7천원으로서, 보건의료과 3건 3억 7,243만원 7천원, 건강증진과 3건 2억 640만원임.

※ **결산서 906~907p, 심사 보조자료 261, 276p 참고**

○ 사고이월사업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예산현액	지출원인행위액	지출액	다음연도이월액	이월사유
계		**633,594**	**562,287**	**219,720**	**342,567**	
보건의료과	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외 1건	316,920	312,182	59,059	253,123	심사보조자료 262p참고
건강증진과	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	316,674	250,105	160,661	89,444	〃 276p참고

- 보건소 사고이월사업은 2개 부서에 3건 3억 4,256만 7천원으로서, 보건의료과 2건 2억 5,312만 3천원, 건강증진과 1건 8,944만 4천원임.

※ **결산서 906~907p, 심사 보조자료 262, 276p 참고**

나) 예산전용현황

(단위 : 천원)

부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전용액		사유
				감액	증액	
보건소 (2건)			**282,444**	**12,200**	**12,200**	
건강증진과	**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**	307-01 의료및구료비	52,230	10,500		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 확보
	난임부부 지원	307-01 의료및구료비	221,814		10,500	
위생과	**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**	202-01 국내여비	2,400	1,700		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점검대상 업소수 증가로 민·관 합동 단속 활동 예산 부족
	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평가 강화	301-12 기타보상금	6,000		1,700	

- 보건소 예산의 전용은 2개 부서에 2건 1,220만원으로서, 건강증진과 1건 1천 50만원, 위생과 1건 170만원임.

※ 결산서 253p, 심사 보조자료 261, 281p 참고

다) 집행잔액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현액 (A)	집행잔액 (B)	비율 (B/A)	사 유 별				
				보조금 정산잔액	낙찰 차액	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	지출 잔액	예비비
계	**18,294,430**	**693,642**	**3.7**	**145,534**	**4,721**	**231,972**	**311,410**	
보건의료과	6,028,432	359,324	5.9	**55,259**	4,145	208,519	91,399	
건강증진과	11,690,221	314,940	2.6	90,085	576	21,991	202,286	
위 생 과	575,777	19,378	3.3	190		1,462	17,725	

- 2020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은 6억 9,364만 2천원이며,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.7%임.

  집행잔액 사유는, 보조금정산잔액 1억 4,553만 4천원, 낙찰차액 472만 1천원,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,197만 2천원, 지출잔액 3억 1,141만원임.

※ 결산서 201~211p, 심사 보조자료 253p 참고

라) 예비비 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출 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계목				
합 계				**224,191,000**	**224,191,000**		
건강증진과	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운영	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59,191,000	59,191,000		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라 방역활동, 방역물품 구매
			의료 및 구료비	165,000,000	165,000,000		

- 2020회계연도 보건소의 예비비 집행 잔액은 없음.

※ 결산서 263p, 심사 보조자료 277p 참고

나. 검토의견

○ 2020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3.7%임.(검토보고서 3쪽 참고),

이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,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여짐.

○ **보건의료과**의 경우

-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의 「의료 및 구료비」 집행잔액이 50,656,770원 발생하여 미집행률이 38.2%였으나,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민원업무 중단으로 미집행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.**(심사 보조자료 258쪽 참고)**
- 독산1동 복지시설(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) 건립의 「시설비」 186,300,000원이 전액 미집행 된 바, 이는 복합시설 건립 관련 2020년 하반기에 LH공사와 복합건립사업 취소 및 우리구 복지시설만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설계비를 확보한 것이나, 「국토부의 사업승인 취소 불가」로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 설계비를 미집행하게 된 것임.

(심사 보조자료 260쪽 참고)

○ **건강증진과**의 경우

- 한의학 난임부부 치료지원사업의 「의료 및 구료비」 보조금

반납금이 32,079,640원 발생하였으나, 이는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자가 저조한데서 기인한 것임.(33명 중 7명 신청)

(심사 보조자료 265쪽 참고)

○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을 **종합 검토한 결과**,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, 변경 등으로 예산을 불용(반납)하는 사례가 있는 바,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여러 행정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되나,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고 ②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추진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붙임 관련법령 1부.

붙임 관련 법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14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82조(결산 승인)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지방회계법 시행령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1. 4. 6.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1. 4. 6.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. <신설 2020. 6. 9.>

1.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2.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6. 9.>

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

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